##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서동용・홍정민・김철민

유정주 · 김승남 · 박홍근

조오섭 · 김정호 · 신정훈

아줌(비) · 김병욱 · 권인숙

고영인 • 이해식 • 양이원영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사학법인 임원의 경우 교원에 비해 결격 사유가 약하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단이 힘들고,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 ~	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7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	
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	1
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u>5년</u> 이 경과한 자	<u>10년</u>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2
된 날부터 <u>5년</u> 이 경과한 자	<u>10년</u>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	3
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	
부터 <u>3년</u> 이 경과한 자	<u>6년</u>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로서 <u>5년</u> 이 경과하지 아니한	<u>10년</u>
자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	3

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 서 <u>3년</u>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된 자로서 <u>5년</u>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생 략) <신 설>

-		
-	<u>6년</u>	
4.		
-		- <u>10년</u>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